

대의 편익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넓은 의미의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로 인식할 경우 이는 R. A. Musgrave가 얘기하는 정부의 자원배분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채(혹은, 국채)에 의한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심지어 바람직하기도 하다. 최적의 사회투자정책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억제하고 적절한 인적자본 및 사회적자본의 형성이 가능하다면 미래세대의 사회서비스지출을 위한 재정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에 의한 재원조달 방식을 강조할 수 없는 이유는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출 비중이 늘어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선택과도 관계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국가주도의 정책과급효과 내지 산물로 보는 것이 설득력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재정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분담관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부간 이전재정관계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체계에 대한 개편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 복지재정과 관련한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있는데, 보통교부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분야의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반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기준재정수요의 반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가 지방재정의 세출기능별 분류와 연계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원배분 공식에서 과거수요 이외에 미래 예측가능한 재정수요를 앞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분권교부세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2005년에 도입된 것으로, 사회복지 관련사업(보건복지부 이양사업)이 전체 이양사업 149개 중 64개이고 이양규모는 589,236백만원으로 61.5%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에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예산규모 증가율이 2001년부터 2005까지 연평균 20.5%에 달하는 반면, 분권교부세율은 내국세 증가율 8.6%에 연동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 외에 중앙정부가 부담했어야 할 부분까지도 지방자치단체가 충당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분권교부세 사업이 보통교부세로 흡수되기 전에 이들 사업에 대한 재정소요에 따른 부족재원의 확보를 위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 통합되어 운영되는데, 사회복지수요의 증대 요인을 감안할 때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시키거나 별도의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전

각이라 함은 사회서비스를 사회적 소비로 인식하는 시각을 의미한다.